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9호
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 을 조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1월 8일
서울특별시장

1.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조정

연번	자치구	구역명 (가칭)	대 상		권리산정기준일	
			위 치	건 축 물	전	후
1	광진구	자양4동 A구역	자양동 193-28	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10세대)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, 1호)	2022.01.28.	2022.08.05.
			자양동 202-36외 1필지 (자양동 202-37)	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12세대)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, 1호)	2022.01.28.	2022.07.29.
			자양동 46-33외 2필지 (자양동 46-34, 46-43)	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16세대)	2022.01.28.	2022.07.27.
			자양동 57-51외 1필지 (자양동 57-50)	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16세대)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, 1호)	2022.01.28.	2022.04.26.
			자양동 197-12외 1필지 (자양동 197-13)	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8세대)	2022.01.28.	2022.04.21.
			자양동 193-18외 1필지 (자양동 193-19)	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18세대)	2022.01.28.	2023.11.15.
			자양동 46-8외 2필지 (자양동 46-30, 46-31)	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24세대)	2022.01.28.	2024.04.23.
2	성북구	성북3구역	성북동 145-51	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8세대)	2022.01.28.	2022.10.20.

2. 조정사유

- 투기의도가 없는 현금청산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민간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기 대상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을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조정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구제함.

3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.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자동 실효하며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도 자동 실효

※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자동 실효

4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5. 안내사항

○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(☎02-2133-7236)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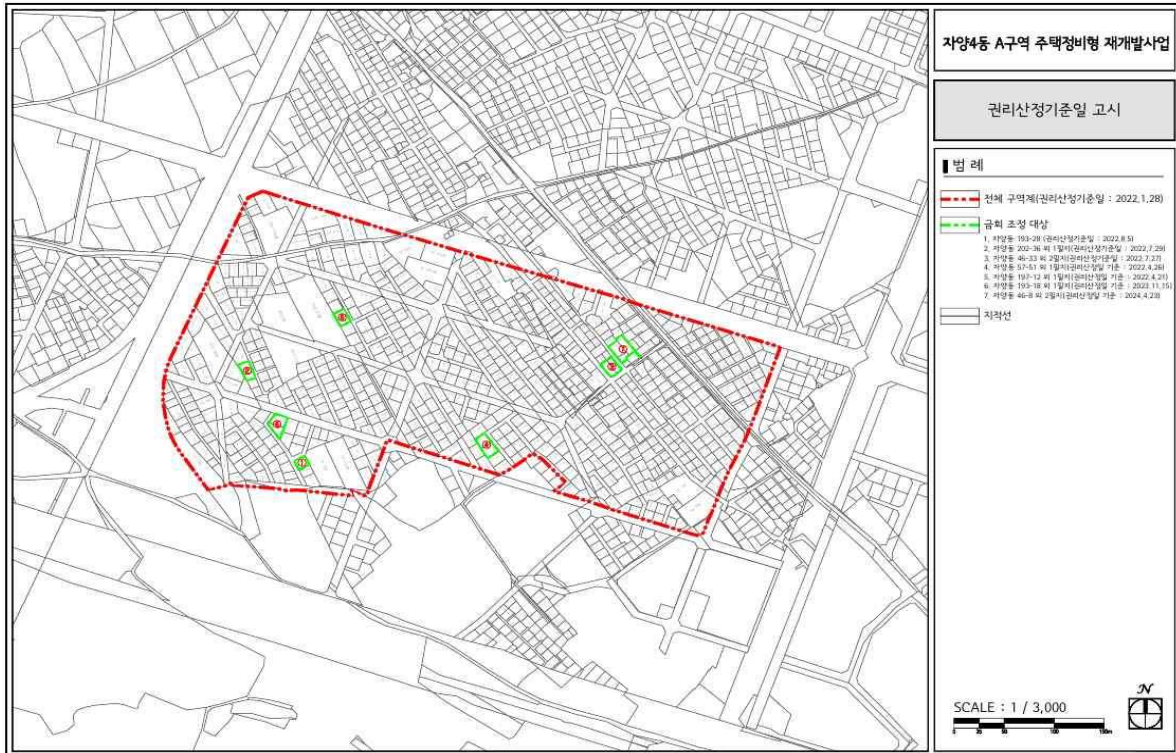
자치구	부서명	연락처	비고
광진구	주거사업과	02-450-9703	
성북구	신속도시정비과	02-2241-2782	

※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, 건축물의 신축,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

※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■ 관계도면

○ 광진구 자양동 193-28 등 7개소



○ 성북구 성북동 145-51

